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정산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

내 용

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농약·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·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아래 [표1]과 같이 추진하였다.

[표1] 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추진 현황

사 업 대상자	지원조건	사업예산(단위 : 천원)				주요사업
		계	국고	지방비	자부담	
○○○○○ ○○○○법인	국 고 30% 지방비 50% 자부담 20%	285,500	83,000	138,333	64,200	- 퇴비생산시설 및 장비 - 육묘장 - 도정시설 등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3조2제1항의 규정에

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(총사업비, 사업기간, 지방비 부담조건 등)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법령의 규정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(총사업비, 자부담금 조건 등)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정한 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전자금융이체결과서 등)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, 정부합동감사 기간(2017. 11. 15.~12. 1.) 중 증빙서류 등을 재확인한 결과, 아래 [표2] ‘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’과 같이 사업자 ○○○○○○○○○법인(대표 ○○○, 공주시 ○○면 ○○○로 000-0)의 퇴비생산시설 설치공사(자가시공)의 사역인부 인건비를 일부 추가 지급하였다.

[표2] 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

성명	근로기간	일급	인건비 집행액(원)			재확인 결과	추가 지급액(원)	회수액(원)
			사역일	지급액	지급일			
○○○	‘14.12.28~ ‘15.2.25	100,000	25일	2,500,000	‘15.2.25			
○○○	‘14.12.28~ ‘15.2.25	100,000	22일	2,200,000	‘15.2.25			
○○○	‘14.12.28~ ‘15.2.25	100,000	23일	2,300,000	‘15.2.25	입원(2일)	200,000	138,000*
○○○	‘14.12.28~ ‘15.2.25	100,000	11일	1,100,000	‘15.2.25			
○○○	‘14.12.28~ ‘15.2.25	100,000	24일	2,400,000	‘15.2.25			

성명	근로기간	일급	인건비 집행액(원)			재확인 결과	추가 지급액(원)	회수액(원)
			사역일	지급액	지급일			
○○○	'14.12.28~'15.2.25	100,000	22일	2,200,000	'15.2.25			
○○○	'14.12.28~'15.2.25	100,000	23일	2,300,000	'15.2.25			
소계				15,000,000			200,000	138,000

* 지원조건(정산결과) : 국비 26%, 지방비 43%, 자부담 31%

특히 자가시공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일일사역인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사역인부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사업자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법인(대표 ○○○)은 자가시공을 실시하면서 일일사역인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실제 사역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별 사역일자 내역만 작성 후 각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불명확하게 지급하였다.

무엇보다도 건설일용근로자 ○○○에게는 근로기간(2014. 12. 28.~2015. 2. 23, 21일) 보다 2일이 추가된 2일분¹⁾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도 사업담당공무원은 농업분야 다른 업무 등을 추진하느라 정산 시 사업자가 오류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은

[시정] 2014년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대해 다시 정산을 실시하고, 사업비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추가 지급된 일용근로자(1명)의 인건비 중 보조금 138,000원을

1) 2017.11.28일 사업시행자 ○○○와 건설일용근로자 ○○○을 통해 통장 입출금 내역, 병원진단서 등 확인한 결과 사역기간에 병원 입원일을 포함하여 정산

회수하여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(52,000원) 및 지방비(86,000원) 세입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정을 실시하고,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